

내년 8월 시행 ‘외국인 고용허가제’ 어떤 제도인가

외국인 고용허가법 국회 통과

- 합리적인 외국인력제도 마련
-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
- 국내 체류기간 3년 미만 불법체류자는 취업 체류 자격 부여, 3년 이상 4년 미만 자는 출국후 재입국 취업 허용
- 국내 체류기간 4년 이상 불법체류자는 출국조치

◎ '03.7.31(목)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,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“외국인근로자외고용등에관한법률”이 통과되었다.

○ 중소기업 특히 3D업종에서의 인력난 해결 요구,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력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,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지난 10년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인 논란이 마무리 되었다.

○ 지난 1995년부터 정부, 국회, 노동계, 시민단체 등 사회 각층에서 산업연수제도가 야기시킨 송출비리, 불법체류, 기본적인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.

- 그러나, 이러한 시도들은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중소기업 관련

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.

○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?야 모두 선거공약으로 채택하였고, 정부에서도 합법적인 제도 도입을 통한 인력난 해소와 3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올해 3월에 이 제도의 도입을 공식으로 천명하였다.

○ 이후 공청회 등 국회차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고용허가제 관련 법률안이 지난 7월 15일에 국회 환노위·법사위를 통과하였고, 7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.

○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“우선, 고용허가제 법률 통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. 외국인력 활용이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때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. 앞으로 고용허가제가 우리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수급 시스템으로 정착되고, 기업이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○ 한편, 금번 고용허가제 도입시 중소기업 등 경영계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여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를 하게 됨에 따라 두 제도의 운용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

- 시민단체, 양노총, 불법체류자를 사용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법률 통과에 일제히 환영의 뜻

을 표하고 있으며, 산업연수생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업체에서도 일단 산업연수생제도가 계속 운영되는데 대하여 만족하고 있으나,

- 병행실시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섞인 기대를 보이고 있다.

○ 이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법 공포 1년뒤('04.8월)부터 시행된다.

- 이에 따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적정 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,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내국인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지양토록 하였으며,
- 외국인근로자들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떳떳하게 국내에 근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.

○ “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▲ 국내 인력수급 상황과 연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과 적정 도입규모를 결정 (국무조정실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)

▲ 정부간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여 정부·공공기관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?도입 담당 (민간 송출회사의 개입 및 부조리 소지 제거)

※ 노동부 고용안정센터, 한국산업인력공단 활용

▲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한후 내국인을 구하려고 1개월 이상 노력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

▲ 사업주는 노동부 외국인고용전산망에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구직자 명부중에서 한국어능력·기능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외국인을 직접 선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

▲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대우

▲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하여 단기간 취업기간(3년) 설정 등

▲ '03.3월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는 최장 2년간,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출국후 재입국하여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인정

○ 특히, 이 법이 공포되는 8월부터 정부는 20여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추진하게 되어 불법체류자의 일시출국으로 우려되었던 산업현장의 인력공백 및 사회적 혼란을 피하는 동시에

- 향후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.

○ 국회를 통과한 “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”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8월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.

○ 정부에서는 이 법 공포와 함께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합법적인 체류자격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처리기준·취업업종 및 신청절차 등을 신문지상 등을 통해 공표할 계획이다.

-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달간을 신청기간으로 설정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 기간중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의 경우 최장 2년간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하게 된다.

○ 한편, 정부는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 체류기간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진출국기간을 설정·운영한 후, 관계부처 협동으로 공단지역,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.

○ 이와 함께, 정부는 '04.8월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법률 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, 국가간 양해각서(MOU) 체결, 외국인 고용전산망 개발 등 제반 준비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.